전자서명인증관리업무보안관리지침

제정 2009. 12. 31. 개정 2013. 9. 1. 개정 2014. 1. 24. 개정 2021. 8. 24.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한국인터넷진흥원(이하 "인터넷진흥원"이라 한다)의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의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의 보안관리는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"(이하 "인증관리센터"라 한다)라 함은 전자서명법 부칙 제5조(공인 인증업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)에 따라, 종전의 전자서명법 제25조에 의하여 전자서명인증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이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운영·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. <개정 2021. 8. 24>
- 2. "인증시스템"이라 함은 가입자의 등록정보 관리, 전자서명키 생성·관리, 공인인증서 생성· 발급·관리, 시점확인 기능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들을 말한다.
- ②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서명법이 정하는바에 의한다.
- 제4조(인중관리센터장) ① 인증관리센터장은 인증관리센터의 보안관리에 관한 계획, 조정, 감독 및 통제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.
 - ② 인증관리센터장은 인증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각 업무별로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 - ③ 인증관리센터장은 인증관리업무의 보안에 대한 책임을 지닌다.
- **제5조(보안관리자)** ① 보안관리자는 인증관리센터장이 임명하는 인증관리센터의 직원으로 하여야 한다.
 - ② 보안관리자는 효율적인 보안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.

- 1. 인증관리센터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
- 2. 인증관리센터의 각종 보안사고 예방 및 조치
- 3. 비밀문서의 관리
- 4. 업무수행 상 보안을 요하는 사항의 협조
- 5. 기타 소관센터의 보안에 관한 사항
- 6. 인증관리센터 보안경비요원의 근무관리
- **제6조(비밀유지의무)** ① 인증관리센터의 직원은 인증관리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사항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② 인증관리센터의 직원은 인증서 발급 등과 관련하여 공인인증기관이 제출한 신청서 및 제출 서류 등을 안전하게 보관·관리하여 외부에 유출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 - ③ 인증관리센터에 출입하는 외부용역업체에 대하여 용역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사항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개하지 않도록 별지 제1호(보안준수 서약서) 서식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2장 자산 분류 및 운영

- 제7조(자산 분류) ① 인증관리센터의 자산은 자산의 성질의 따라 시스템자산, 소프트웨어자산, 정보자산, 문서자산 및 설비자산으로 구분한다.
 - ② 시스템자산이라 함은 하드웨어, 네트워크 장비, 백업 장치 및 프린터 등의 시스템을 말한다.
 - ③ 소프트웨어자산이라 함은 소스코드,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를 말한다.
 - ④ 정보자산이라 함은 전자서명키, 데이터베이스, 감사기록 및 백업기록 등의 정보를 말한다.
 - ⑤ 문서자산이라 함은 업무지침서, 운영지침서, 문서관리대장, 백업관리대장, 보고서, 공문 및 실질심사 관련자료 등의 문서를 말한다.
 - ⑥ 설비자산이라 함은 항온항습기, 방범장치, 출입통제설비 및 무정전전원공급장치 등의 설비를 말한다.
- 제8조(자산 관리) ① 제7조제1항에서 분류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.
 - 1. 자산목록은 계량적 수치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기록
 - 2. 자산의 반출입, 신규도입 및 폐기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인증관리센터장 또는 보안관리자에게 승인을 받고 변경사항을 기록
 - ②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자산은 시스템관리자가 관리한다.
 - ③ 정보, 문서 및 설비자산은 보안관리자가 관리하며, 정보자산의 경우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다.

- ④ 자산별 세부 담당자는 인증관리센터장이 별도로 정한다.
- 제9조(문서처리 및 운영절차) ① 인증관리업무와 관련된 문서처리 절차는 전자서명인증관리업무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② 인증시스템에 대한 운영절차는 해당 업무지침서를 준수하여야 한다. 해당 업무지침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.
 - 1. 신청서수발업무지침서
 - 2. 인증서 등록 · 발급 및 키생성업무 지침서
 - 3. 웹공고업무지침서
 - 4. 감사기록백업업무지침서
 - ③ 제2항 이외의 인증관리업무와 관련된 시스템의 운영은 해당 운영지침서를 준수하여야한다. 해당 운영지침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.
 - 1. 라우터운영지침서
 - 2. 침입차단시스템운영지침서
 - 3. L4 스위치운영지침서
 - 4. 네임서버운영지침서
 - 5. 네트워크관리시스템운영지침서
 - 6. 로그서버운영지침서
 - 7. 메일서버운영지침서
 - 8. 서버관리시스템운영지침서
 - 9. 침입탐지시스템운영지침서
 - 10. 기타 운영지침서
 - ④ 제2항의 업무지침서 및 제3항의 운영지침서는 해당 시스템 운영담당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제10조(문제보고) ① 인증관리센터의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네트워크를 통한 시스템의 침입 및 기타 시스템의 안전성에 관하여 의심이 갈 경우 즉시 인증관리센터장 또는 보안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② 인증관리센터장 또는 보안관리자는 관련 기록을 검토하여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3장 물리적・환경적 보안관리

제11조(제한구역 및 통제구역) ① 인증관리센터는 제한구역, 통제구역 및 사무공간으로 구분한다.

- ② 중앙통제실, 공조실, 인증S/W평가실은 제한구역으로 정한다.
- ③ 무게감자기가 설치된 구역 이후의 공간을 통제구역으로 정한다.
-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제외한 공간은 사무공간으로 정한다.
- 제12조(보호조치) 인증관리센터의 일반적인 물리적, 환경적 보호조치는 공인인증기관의보호 조치에관한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.
- 제13조(출입인가) ①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의 출입은 인증관리센터장이 승인하는 인증관리센터의 직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서 정한 자 이외의 업무상 인증관리센터의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 출입할 필요가 있는 자는 인증관리센터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에 제1항에서 인가된 직원의 안내를 받아 출입하고 별지 제2호(출입대장)서식에 해당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고,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(작업계획및결과서)서식도 기록하여야 한다.
- **제14조(보안경비요원)** ① 인증관리센터는 보안경비요원을 24시간 배치하여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다.
 - ② 보안경비요원이 통제구역 내의 상황을 CCTV 카메라로 감시하고 이상이 있을 시에는 비상 연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4장 네트워크 · 시스템 보안관리

- 제15조(네트워크 보안) ① 인증관리센터는 인증관리업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네트워크에 대해, 공인인증기관의시설및장비등에관한규정(운영기준 별표)을 충족하는 네트워크보안기능을 갖추고 안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.
 - ② 시점확인시스템을 제외한 인증시스템은 내·외부의 정보통신망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한다.
- 제16조(시스템 보안) ① 인증관리센터는 인증관리업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 공인인증기관의시설및장비등에관한규정을 충족하는 시스템보안기능을 갖추고 안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.
 - ② 보안관리자는 시스템 사용자의 권한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제17조(비밀번호 관리) ① 비밀번호는 해당 업무의 담당자만이 알고 있어야 하며, 분기별 1회

또는 필요시마다 변경하여야 한다.

- ② 비밀번호는 해당 업무의 담당자가 기록하여 보안금고에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.
- ③ 비밀번호를 업무상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는 보안관리자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별지 제4호 (비밀번호이용대장) 서식에 기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.
- ④ 비밀번호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.
- 1. 숫자와 문자 등을 혼합하여 8자리 이상을 부여할 것
- 2. 사용자계정과 동일하지 않을 것
- 3. 일반사전에 등록된 단어의 사용을 피할 것
- 4. 조직 관련명칭, 연속된 숫자 또는 문자 등의 사용을 피할 것
- 5. 수첩, 노트에 기록하는 등 문서화 금지
- 6. 플로피디스크, 공유 디렉토리 등의 저장매체에 보관 금지
- 7. 통신매체 또는 온라인매체를 통한 공개 금지

제5장 재해복구 관리

- 제18조(취약점 분석·평가) 인증관리센터는 정기적으로 인증시스템의 취약점을 점검하여야 한다.
- **제19조(비상대책)** ① 인증관리센터는 각종 재난 및 재해로부터 인증관리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비상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비상대책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.
 - 1. 인증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복구절차
 - 2. 복구절차의 검증, 보수 및 재평가
 - 3. 보안사고의 보고 및 처리절차
- **제20조(백업사이트 운영)** 인증관리센터는 인증관리업무의 지속성, 안전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백업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다.
- 제21조(백업) ① 인증관리센터는 주요 자료를 주기적으로 백업하여야 한다.
 - ② 인증관리센터는 안전한 백업을 위하여 백업지침서를 작성하고 준수하여야 한다.
 - ③ 백업지침서는 백업의 대상 및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.
 - ④ 백업한 자료는 월1회 인증관리센터 및 백업사이트에 보관하여야 한다.
- 제22조(비상연락체계) 인증관리센터는 각종 재난 및 재해로부터 신속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

도록 관련기관을 포함하는 비상연락체계를 갖추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.

제6장 기타

- 제23조(보조기억매체 취급과 보안) ① 인증관리센터의 직원은 인증관리업무 수행 시에 보안 관리자가 승인한 보조기억매체만을 사용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서 사용된 보조기억매체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.
 - ③ 전자서명생성정보 등이 저장된 보조기억매체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별도의 대장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.
 - ④ 제1항에서 사용된 보조기억매체를 폐기하는 경우 보안관리자의 입회하에 재사용이 불가 능하도록 안전하게 폐기하여야 한다.
- 제24조(일일보안점검) 일일보안점검은 인증관리센터의 보안 상태를 점검하고 별지 제5호(전자 서명인증관리센터보안당직점검일지)서식에 기록하여 인증관리센터 관리자 및 센터장에게 관리·감독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1. 8. 24.>
- 제25조(감사) 감사관리자는 인증관리센터의 인증관리업무 수행 중 발생되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 - 1. 인증관련 시스템 로그기록
 - 2. 네트워크 로그기록
 - 3. 출입자 로그기록
 - 4. 보안 및 안전교육 실시현황
- 제26조(교육) 인증관리센터의 직원은 인증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.
 - 1. 인증관련 시스템 사용방법
 - 2. 비상대응절차

제27조(신규 시스템 도입 및 기존 시스템 변경) 인증관리센터의 직원은 신규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기존의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증관리센터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또한, 이를 개발환경에서 검증테스트 결과를 확인 완료 후에 운영환경으로 적용하여야 한다.<신설 2014.1.24>

부 칙

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3. 9. 1>

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4. 1. 24>

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1. 8. 24.>

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 <개정 2021. 8. 24.>

보 안 서 약 서

본인은 한국인터넷진흥원(이하 "진흥원)에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.

- 1. 본인은 "진흥원"에서 "용역" 수행중 취득한 제반 비밀사항을 업무 수행중은 물론 복귀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.
- 2. 본인은 "진흥원"의 기밀을 누설하였을 때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에 대한 제반 법규에 의거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 합니다.
- 3. 본인은 업무상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해 "진흥원"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그에 대한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집니다.

년 월 일

업 체명:

직 위:

성 명: (인)

출입통제대장

결	재		출	입 자			ネ () () つ)		인	회	자	
보 안 담당관	담당	년월일	소 속 (또는 주소)	생년월일	직급	성명	출입시각 용 무 퇴청시각	용 무	직급	성명	서명	비고

작업계획 및 결과서

지어가 서면	소 속	연락처		
작업자 성명	직 위	(전화번호)		

<작업 예정사항>

- 1. 의뢰일시: 20 년 월 일 시 분
- 2. 의뢰내용:

〈조치사항〉

- 1. 작업일시: 20 년 월 일 시 분 ~ 20 년 월 일 시 분
- 2. 작업내용:

처리일자 : 20 년 월 일

작업자: (인)

담 당 자 : (인)

7	담당확인	팀장확인	단장확인	특 기 사 항
조 치		전결		
결 과				
" 				

한국인터넷진흥원

비밀번호 이용대장

일련	작업	기 이 기	ત્રી ભીગી ભી	비미비중 요ㄷ	회 과 그 기	บโ –	확인		
번호	일시	작업자	작업내역	비밀번호 용도	관련근거	비고	작업자	팀장	

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 보안당직 점검일지

_ ,	, , ,		. –	•		•		•	
						반 장	관리자	센터장	
20 년 월	일	요일	:00 ~	익일 :	00				
						당직자 :		(61)	
				_ •		경역사:		(인)	
1. 인증관리/	센터 보	안당직 	점검사	·항 					
구 분		업무내	용 (상황5	보고)			특이사형	-	
메인센터 주출입구									
메인센터									
4층 복도									
나주									
백업센터									
2. 총기 관리	점화								
2. 6/1 11/1	1 1 7				ı				
제품 번호	2] 7]		출 기 H	회사기기	2] 7]		반납 기머	회스) 기	
	시간	수령자	서명	확인자	시간	반납자	서명	확인자	
3. 기타 특이	3. 기타 특이사항								